쿠웨이트 외국투자유치에 관한 정보

#쿠웨이트 내 투자이점

*2035 쿠웨이트비젼

'2035 쿠웨이트비젼' 은 국왕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쿠웨이트 국왕은 현재 진행 중인 개발계획을 승인한 바 있고, 그 계획은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민간부문에게 있어 쿠웨이트를 금융, 무역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제중심지로 변모시키고, 기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력을 증대하고, 국가의 가치를 보존하여 경제개발을 실현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적절한 법적토대를 마련하는 방식을 통하여 비즈니스환경을 제공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개방된 시장경제

쿠웨이트는 꾸준히 개방된 경제와 광범위한 무역관계를 구축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무역을 이행하고 있고, 해외 무역부문에 시장을 개방하고, 유동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쿠웨이트는 안전을 이유로 위생상품과 종교관련상품을 제외하고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 쿠웨이트에서는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으며, 자본금이전 및 송금에도 어떠한 제약도 없다.

*전략적 위치

쿠웨이트는 걸프북쪽지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국가면적은 17,819평방킬로미터이며, 이러한 위치의 이점으로 쿠웨이트는 명실상부한 무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쿠웨이트는 3개의 주요시장(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인접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이라크 국경과 육상으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란과는 해상으로 인접하고 있다.

*법률을 통한 편의 제공 및 법적 토대

쿠웨이트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무역관계를 구축하여 경제에 대한 민간투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경제관련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쿠웨이트는 공공시설(전력, 수자원 발전), 거대기반시설사업을 포함하여 국내외 투자를 위한 새로운 분야를 개방하였다. 쿠웨이트경제법은 경쟁력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다.

*풍부한 석유자원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따르면 쿠웨이트 내 석유매장량은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란, 이라크 다음으로 5위이다. 현재 쿠웨이트 석유생산량은 1일당 3백만배럴이며, 쿠웨이트는 2015년 경까지 생산량을 1일당 350만배럴, 2020년 경까지는 1일당 4백만배럴로

증산할 예정이다.

***회사에 적은 규모의 과세 및 개인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면세**

쿠웨이트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많은 외국회사가 있으며, 이 외국회사에 대하여는 「1955년 제3호 소득세법」 대신 「2008년 제2호 개정법」에 따라 15%의 고정비율로 과세한다.

특정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쿠웨이트 자유무역지대에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는 자유지대 내에서 이행한 작업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며, 이 회사는 외국인이 100% 소유할 수 있다.

#외국투자에 대한 보장 및 혜택

***보장**

쿠웨이트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사업은 몰수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자는 쿠웨이트법과 투자허가조건에 따라 투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다른 외국인투자자 또는 내국인투자자에게 이전하거나, 협력관계에 있는 내국인파트너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는 사업수익과 자본금과 배상금을 어떠한 제약 없이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혜택**

소득세와 그 밖의 세금면제기간은 10년 이하이다. 사업설립, 확장, 개발에 필요하여 수입한 기계, 장비, 부품에 대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며,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한 원자재와 반제조물품과 포장물품에 대하여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쿠웨이트에서 시행하는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혜택**

「2001년 제8호 쿠웨이트 내 외국인자본직접투자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자에 대하여 다음의 혜택 전체 또는 일부를 허용한다:

·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한 일자부터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소득세와 그 밖의 세금을 면제하며, 사업 내 발생한 모든 새로운 투자에 대하여도 사업설립 시 본 투자에 허용한 면세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세금을 면제한다.

· 다음의 수입품에 대하여는 관세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 사업설립, 확장, 개발에 필요한 기계, 도구, 부품
-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반제조물품, 포장물품

#투자허가취득절차

1. 접수

- 투자서비스센터 내 접수처직원이 투자자로부터 접수를 받는다.
- 투자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투자허가신청서사본 또는 투자법 혜택신청서사본을 수령한다.
- 고객담당부직원이 투자자와 허가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다. 신청서에는 사업특성 및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사업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목록과 원자재 및 물품목록, 환경영향평가서 등)를 첨부한다.
- 투자자는 필요한 문서작성에 대한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
- 투자자에게 신청 후 절차와 답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통지한다.

2. 사업검토

- 관할기관이 내부적으로 신청서를 검토한다.
- 사업의 특성과 활동의 종류에 따라 관할정부기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승인을 얻는다.
- 필요한 승인을 얻은 후 관할기관은 사업평가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외국인자본투자위원회에 발송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한다.

3. 승인서발급

- 상공부장관을 주축으로 하는 외국인자본투자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장관의 권고안을 승인한다.
- 사업에 대한 장관의 결정(승인, 거부, 연기)를 공포하고 투자자와 관계인에게 결정을 통지한다.
- 승인결정을 관보에 게재한다.
-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허가발급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한다.
- 투자자는 영업허가증사본을 투자자서비스센터에 제출한다.
- 사업에 대한 투자허가증을 발급하고 투자자는 이를 투자등록부에 등록한다.
- 투자허가사실과 등록사실, 등록일자, 번호,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한다.

4. 이행

- 관할당국은 투자혜택과 면세허용을 통지한다.
- 투자서비스센터 담당부직원은 관할당국과 협의하여 투자자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 투자자는 관세면제증명서를 수령한다.
- 투자서비스센터직원은 사업시행 후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감시한다.
- 투자서비스센터는 투자자가 직면한 모든 민원과 문제를 접수하여

이를 해결 및 시정한다.

#사업에 관한 법률

쿠웨이트 「상법」 제23조와 제24조에는 쿠웨이트 내 영업이행에 대한 기본원칙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내국인동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쿠웨이트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쿠웨이트자본이 총 자본의 51% 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 「상법」 제24조에는 외국회사는 쿠웨이트에 지점을 설립할 수 없으며, 쿠웨이트 에이전트를 통하여서만 쿠웨이트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쿠웨이트정부는 현재 국가에서 석유 외 다른 부문의 경제적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였고, 쿠웨이트정부는 미래의 성장과 다양성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해져야 하며, 외국회사의 참여만이 민간부문의 역할을 장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001년 4월 22일, 쿠웨이트의회는 「쿠웨이트 내 외국인자본직접투자에 관한 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외국자본의 재산권한도를 철폐하여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상법」에 명시한 기본원칙은 「투자법」에서 명시한 투자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외국인은 일부 부문에서 영업하는 법인의 1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쿠웨이트 내 외국인자본직접투자에 관한 법」은 투자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투자자에게 10년까지 면세혜택을 제공하며, 해외인력이 자유롭게 입국하도록 지원하고, 투자를 목적으로 필요한 토지와 부동산을 할당하여 준다. 또한 투자사업에 필요하여 수입한 장비와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며, 투자사업재산은 어떠한 보상 없이 몰수하지 않도록 보장하여 준다. 또한 투자자의 재산과 투자 수익은 국외로 송금이 가능하며, 투자사업에 관한 기술적 정보의 비밀은 보장된다. 또한 투자자는 이 법의 규정이 향후 개정 및 변경 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투자자가 상기 명시한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기술, 선진방식의 운영, 실무적, 기술적, 마케팅상의 경험
- 쿠웨이트민간부문참여의 확대 및 활성화에 참여
- 내국인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교육제공
- 국내상품수출장려에 기여
- 환경보호, 공공질서 및 도덕준수, 공공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침 이행

출처: 쿠웨이트 외국투자국(http://www.kfib.com.kw/arabic/Default.aspx)